

주민기본대장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외국인주민에게도 주민표가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의해, 외국인주민분들의 편리성의 향상이나 시읍면등의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는것은, 2012년(헤세이24년) 7월경 예정입니다. 동시에, 외국인등록법은 폐지됩니다.

외국인 주민의 편의성이 이렇게 향상됩니다.

1. 일본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되는 세대 전원이 기재된 증명서(주민표의 사본등)가, 발행 가능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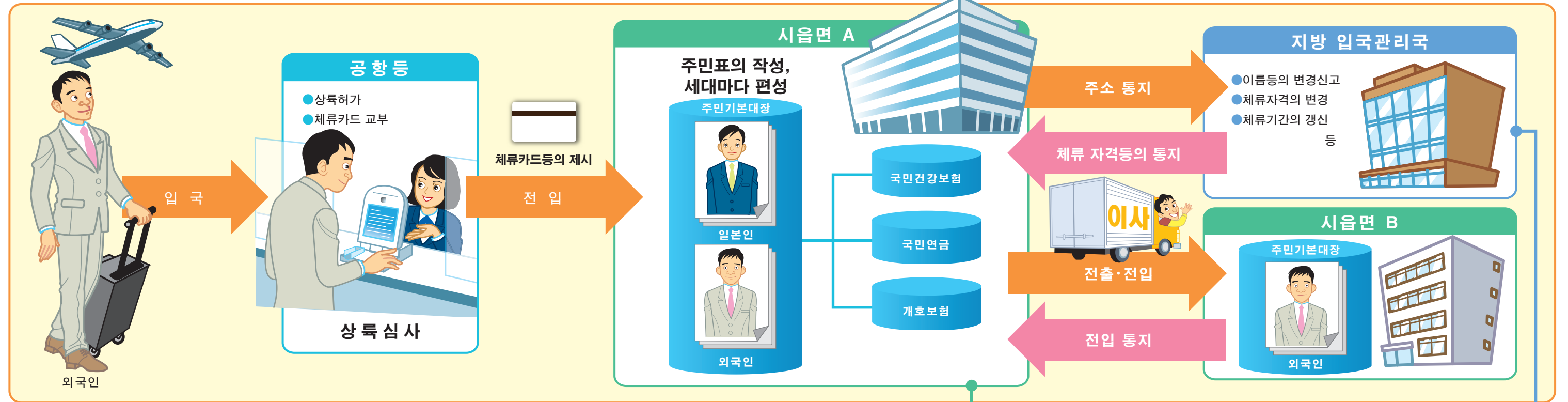
2. 주소변경의 신고에 의해,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등의 신고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종래에 비해 신고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변경에 대해서, 종래, 지방 입국관리국과 시읍면의 양쪽 모두에 필요했던 신고가 지방 입국관리국만의 신고로 끝납니다.



법 개정 후의 이미지



신제도에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외국인등록제도로부터 주민기본대장제도에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읍면에 대해 임시주민표를 작성해,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거주민표는 시행일에 주민표가 됩니다.



시행일에 가주민표에서 주민표로 이행합니다.

(1) 기준일에 있어

- ① 시읍면의 외국인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 ② 시행일에 있어 해당 시읍면의 외국인 주민에 해당된다고 전망되는 외국인의 양쪽 모두의 조건을 채우는 외국인주민에게 대해서, 가주민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가주민표의 기재사항은 외국인 본인에게 통지됩니다. 가주민표의 기재가 실제와 다른 경우는, 외국인등록법에 근거한 변경신청등의 소정의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2) 기준일 후, 시행일의 전날까지의 사이에, 상기 ①②의 양쪽 모두의 조건을 채운 외국인에 대해서도, 같은 가주민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도, 외국인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기초로 가주민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외국인등록법에 근거한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

- (3) 원쪽의 수속에 의해, 외국인 등록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에서, 시행일에 외국인 주민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는, 시행일에 주민표가 작성되기 때문에, 특별히 외국인이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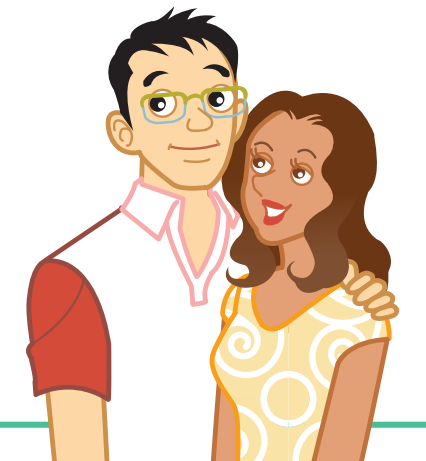
* 시행일 직전의 입국등에 의해, 시행일에 주민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시행일 후 14일 이내에 이름, 주소등의 신고를 시읍면 창구에서 실시해, 주민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신제도 이행 후에는, 법무성(지방 입국관리국)과 시읍면에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외국인주민이, 별도로 시읍면에 신고를 하는 등의 부담이 적게 됩니다.

-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도 주민표가 작성되어 일본인주민과 외국인주민등이 세대 마다 편성되어 주민기본대장이 작성됩니다. 이것에 의해,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도 주민표의 사본등이 발행 가능하게 됩니다.
- 지금까지 주민기본대장과 외국인등록법의 2개의 다른 제도로 파악하고 있던 복수국적세대(외국인과 일본인으로 구성되는 세대)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하게 세대구성을 파악할 수 있어 세대 전원이 기재된 주민표의 사본등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주기법에 근거하는 전입계등이 되었을 경우,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등의 신고가 있었다고 보이는 것부터, 종래의 외국인등록제도시에 비해 신고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라도 이사 등 주민기본대장법상의 수속이 가능해집니다.
- 주민기본대장의 일부의 사본에 대해서는, 나라와 지방공공단체 및 개인이나 법인등에 의한 열람등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람등의 청구가 있었을 경우는, 외국인주민도 그 대상이 됩니다.



일어두면 편리한
방문인도
용어집

【외국인등록법】
체류 외국인의 거주나 신분등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거주하고 있는 시읍면에 신분 사항이나 거주지등을 신고하도록 외국인등록을 실시하는 것을 정한 법률입니다.

【주민기본대장】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등이 기재된 주민표를 세대 마다 편성한 것으로, 주민에게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 처리의 기초가 됩니다. 「주민기본대장법」은 그 제도를 정한 법률입니다.

【외국인주민】
개정 후의 「주민기본대장법」에서는, 적법하게 3개월을 넘어 체류해, 주소를 가지는 외국인을 주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체류카드 교부 대상자나 특별 영주자 등입니다.

【체류카드】
개정 후의 입국법에 근거해, 법무부 장관이, 우리 나라에서 중장기에 걸쳐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상륙허가 등 체류와 관련된 허가에 수반해 교부하는 카드입니다.